

입법예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산림자원과)

## 1. 개정이유

국유림 입목수확(벌채)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업기계 이용 및 작업원 운영 등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추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국유임산물 매각기준에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추가(안 제29조 별표2 개정)

매수인은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등을 준수하며 입찰참가자는 임업기계 이용, 작업원의 기술인력 투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키시는 등 조치를 해야 하며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나.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에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추가(안 제27조제2항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수라(修羅, 나무운반미끄럼틀)의 설치를 삭제하고 매수인은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입찰 시 제출한 작업계획서 등을 준수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키시는 등 조치를 해야 하며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합의 전

라. 기 타 : 입법예고(2026. 6. 00. ~ 7.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안전관리

가. 매수인(계약채결자)은 입목수확(벌채), 조재(造材)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입목수확(벌채) 작업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임업기계장비 중에 휴대형 기계를 제외한 임업기계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임업기계의 구조상 정해진 안정도, 최대주행경사, 최대적재하중, 최대사용하중 등을 초과하여 전도(顛倒)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이용이 제한되거나 조재(造材)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휴대형 기계를 이용할 수 있다.

2) 입목수확(벌채) 작업원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능 2급 이상 기술자격 소지자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임업  
기계장비 기술교육 이수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3) 입목수확(벌채) 작업 전 안전교육과 안전사고 예방 현장점검을  
매일 실시한다.

다. 매수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  
생한 경우 같은 법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면서 중대재  
해 발생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체 없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보고한 중대재해 발생 내용을 산림청장에게도 알려  
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제2쪽 제10조 “[수라(修羅, 나무운반미끄럼틀)의 설치]”를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매각대상 임산물을 반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수라(修羅, 나무운반미끄럼틀)는 목(木)수라 또는 플라스틱  
수라에 한정한다”를 “매수인은 임산물을 반출하기 위해 입목수확(벌채),  
조재(造材)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입찰 시 제출한 작업  
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입목수확(벌채) 작업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임업기계장비 중에 휴대형 기계를 제외한 임업기계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임업기계의 구조상 정해진 안정도, 최대주행경사, 최대적재하중, 최대사용하중 등을 초과하여 전도(顛倒)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이용이 제한되거나 조재(造材)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휴대형 기계를 이용할 수 있다.

2. 입목수확(벌채) 작업원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능 2급 이상 기술자격 소지자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임업기계장비 기술교육 이수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3. 입목수확(벌채) 작업 전 안전교육과 안전사고 현장 현장점검을 매일 실시한다.

② 매수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면서 중대재해 발생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체 없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중대재해 발생 내용을 산림청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산림청 산림자원과 |                  |
| 연 락 처     | (044) 481 - 4189 |